



학교에서 보복 행위를 하고 있나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 지침

2015 년 4 월, 발행번호: 5408.03 - Korean

소개

보복은 보호된 권리¹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차별, 강압, 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보복 행위는 미 연방법 및 주법에 의거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의 1973 년 재활법 제 504 조(Rehabilitation Act of 1973) 및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개인의 장애²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2 가지 법규는 각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보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³

또한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 56046 조는 서비스 또는 편의를 이용해야 하는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어떤 학생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러한 학생을 옹호하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학군 또는 그 외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 또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¹ 34 C.F.R. 파트 100. 섹터 100.7(e).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² 29 U.S.C. 섹터 701; 42 U.S.C. 126 장.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³ A.C. v. 셀비 카운티 교육위원회, 60 IDELR 271, 711 F.3d 687 (6th Cir. 2013); Andrews v. Ohio, 104 F.3d 803, 807 (6th Cir. 1997); Burns v. 콜럼버스시, 91 F.3d 836, 842 (6th Cir. 1996).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교육 기관은 그러한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직원 또는 계약자를 상대로 그들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973 년 재활법 제 504 조 및 미국 장애인법

1973 년 재활법 제 504 조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행위로부터 당사자(개인)를 보호하는 연방법입니다. 동법 제 504 조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및 고용주가 프로그램 혜택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진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504 조에 의거해 각 학교는 자격(수급권)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에 합당한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동법 제 504 조는 동 조항의 의거해 보호되는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고발, 증언, 당사자 보조 또는 사건 조사에 대해 일체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⁴

미국 장애인법(ADA)⁵ 은 학교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장애인법은 동법에 의거해 고소를 제기하는 자들을 상대로 한 보복, 강압 또는 협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복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을 대신해 시민권사무국(OCR)에서 고소를 제기한 이유로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해당 학생을 외국어 수업 수강생으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을 보여주는 해당 학군의 회의록은 해당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⁶ 의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밝혀진

⁴ 29 C.F.R. 섹터 33.13; 34 C.F.R. 섹터 100.7(e); 34 C.F.R. 섹터 104.61.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⁵ 42 U.S.C. 섹터 12203; 28 C.F.R. 섹터 35.134.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⁶ 피넬라스 카운티 (Fl.) 학교 지구, 52 IDELR 23 (OCR 2009).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바 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보복은 주변 정황으로부터 추론되며 4 단계의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⁷

고소를 제기한 원고 측은 법적으로 보호된 활동에 관여했습니까?

원고 측 당사자는 학생을 대신해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언이나 조사 또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 3자에 대한 지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학생을 옹호하는 절차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 측은 불리한 조치의 표적이 되었습니까?

원고 측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은 거의 모두 불리한 조치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가 학적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해당 학군에서 이를 거부한 후 수수료 2,600 달러를 댓가로 해당 학적부 사본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을 때 그 학부모는 학군 측의 보복 행위에 대해 유효한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심리를 요청하기도 전에 해당 학군은 학부모에게 학적부 사본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⁸

또 다른 심리에서는 문제의 행위가 보복으로 성립되려면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교장이 해당 학생에게 “퇴학” 조치를 내리기에 충분한 징계 사유를 축적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중”임을 당사자인 학생에게 언급했을 때 OCR은 교장이 내뱉은 말에서 타협의 여지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와 같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그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는 교장의 의견은 그 자체가

⁷ Wilbourne v. Forsyth 카운티 학교지구, 38 NDLR 89, 36 F.App’x 473 (11th Cir. 2009); Edwards v. Gwinnet 카운티 학교지구, 62 IDELR 3, 977 F.Supp.2d 1322 (N.D. Ga. 2013); Nguyen v. 클리브랜드시, 229 F.3d 559, 563 (6th Cir. 2000).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⁸ Pollack v. 지역 교육 단위 75, 63 IDELR 72 (D.Me. 2014).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복 행위로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⁹

*캘리포니아주 샌 라몬 밸리 통합 학군(San Ramon Valley (Cal.) Unified School District)*에 대한 판례(38 IDELR 73, OCR 2002)에서 OCR은 부차적 요인 즉, “불리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내 보복 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OCR은 어떤 코치가 자신이 맡은 한 학생 선수로 하여금 문제의 학생을 옹호하는 학부모의 노력을 이유로 그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불리한 조치는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OCR은 문제의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 유의할만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으며 코치의 발언이 해당 학생을 옹호하는 학부모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군 측이 문제의 학부모 또는 학생을 상대로 보복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추론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된 활동과 불리한 조치는 (보복 행위를 추론하고 입증할만한 증거로서) 서로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원고 측이 보복 행위에 대한 고소에서 승소하려면 보호된 활동의 결과로서 보복 조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인은 보호된 활동을 한 직후에 불리한 조치가 곧바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¹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원고 측이 주장한 바와 같이 보복 행위를 한 주체(학교 측)가 보호된 활동을 인지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보복 행위의 주체가 보호된 활동과는

⁹ Fontana (Cal.) 통합 학교지구, 36 IDELR 187 (OCR 2001).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¹⁰ Cherokee 카운티 (GA) 학교 지구, 54 IDELR 301 (OCR 2009); Davis v. 클락 카운티 학교지구, 60 IDELR 152 (D. Nev. 2013).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무관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¹¹

학교 측은 문제의 학생에게 불리한 조치에 대해 합법적이면서도 비보복적인 사유를 확인했습니까?

상기의 3 가지 요인들이 입증되자 OCR 또는 다른 심리 판결 담당자는 해당 학군 측이 문제의 학생에게 불리한 조치에 대해 합법적이면서도 비보복적인 사유를 진술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학군 측이 그럴듯한 합법적 사유를 주장할 경우, 원고 측은 문제의 학생에게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고 측이 제시한 사유가 진정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며 다만 단순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¹²

예를 들면, *엘크 그로브 통합 학군(Elk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에 대한 판례(36 IDELR 160, 2001)에서 원고 측의 한 여교사는 소속 학군 측이 그녀가 진행하는 폴아웃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 수업 장소를 교내의 협소한 공간으로 옮기는 영구적 조치를 내리자 그녀는 학군 측이 자신을 상대로 보복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학군 측은 문제의 결정이 그러한 수업에 대한 여교사(원고)의 과거 옹호 이력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 보복적 조치라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학군 측이 제시한 문제의 교실 이전 사유는 학교 측이 수업 공간이 부족한 이유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군 측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당국이 RSP 수업 장소를 소규모 수업 공간에 배치할 것을 시정 조치

¹¹ *Edwards v. Gwinnet 카운티 학교지구*, 62 IDELR 3, 977 F.Supp.2d 1322 (N.D. Ga.2013); *Cherokee 카운티 (GA) 학교지구*, 54 IDELR 301 (OCR 2009); *Davis v. Clark 카운티 학교지구*, 60 IDELR 152 (D. Nev. 2013); *Weber v. Cranston Sch. Comm.*, 32 IDELR 141 (1st Cir. 2000).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¹² *A.C. v. Shelby 카운티 교육 위원회*, 60 IDELR 271, 711 F.3d 687 (6th Cir. 2013); *Stengle v. 분쟁 해결 사무소*, 109 LRP 24455 (M.D. Pa. 2009).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차원에서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CR은 여교사가 애초에 RSP 수업을 진행한 교실을 이전한 학군 측의 제반 사유가 그녀를 상대로 한 보복 행위의 구실이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판결에서 OCR은 보복 피해를 주장한 원고 측의 고소를 기각하면서 학군 측이 그러한 교실 이전에 대해 합법적이면서도 비보복적인 사유를 제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측 남학생의 어머니는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옹호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학군 측이 아들을 상대로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학군 측을 고발했습니다. 일례로 문제의 남학생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교실 밖에서 있어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OCR은 다른 3명의 학생들도 잘못된 행동을 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실 밖에서 있어야 하는 벌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남학생은 성희롱에 끼어들었음을 학군 측에서 확인한 이유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름 프로그램 수강생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OCR은 문제의 남학생이 다른 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혐의에 관한 정보를 학군 측이 검토한 과정이 이 남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조치가 자의적인 보복 행위였다는 혐의를 반증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¹³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 56046 조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 56046 조는 지역 교육 기관에 소속된 교사나 다른 교직원 또는 계약직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 당사자가 특수 교육을 받는 어떤 학생을 위한 서비스 또는 편의를 옹호하거나 그러한 옹호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 기관이 그러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당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¹⁴

¹³ Fontana (Cal.) Unified School District, 36 IDELR 187 (OCR 2001).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¹⁴ 공립학교 직원은 직원이나 계약자를 계속 지도하거나 규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 기관은 이익 상충, 양립할 수 없는 행동 또는 학생 기록의 비밀성에 관하여 법률이나 규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56046은 다른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 56046 조는 어떤 학군, 관할 카운티 산하의 교육청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SELPA)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해 서비스 또는 편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보조할 대리인을 협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당사자를 협박, 위협 또는 강압하기 위해 직권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행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립학교 교직원이 직권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어떤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또는
- B. 부정적인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예를 들면 어떤 교사가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어떤 학생을 대신해 그 학생의 학부모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경우, 소속 학군은 학부모에게 도움을 준 이유로 해당 교사를 협박하거나 징계할 수 없습니다.

보호된 행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 A. 선의의 옹호 행위

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고용 계약 또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공립학교 직원의 기존 권리, 특권 또는 구제 수단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교육 기관은 차별과 관련된 모든 주장을 조사하고 필요하고 적절할 때마다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 1회 검토 사이클 동안, 불만 사항 및 해결 방법에 관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보복이 있어서는 안되며,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터 234.1[b][e][f], 260; 5 CCR Sects. 4621 and 4962.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

- B.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거해 보장된 바와 같이 자녀에게 적합한 무상 교육 혜택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 C. 그 외 1973년 재활법 제 504 조 및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거해 보장된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 56046 조에 의거해 보호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학군, 카운티 산하 교육청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SELPA)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 56046 조에 의거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은 교사,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예: 언어 치료, 물리 치료 및 작업 요법)를 제공하는 자, 특수교육 보조원, 수업 보조원, 활동 보조원, 건강 보조원, 그 외 학군 소속 교직원 또는 사무 직원, 학군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또는 하청 계약 단체 등을 각각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 56046 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첫째,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특정 학생의 요구 사항과 강점 그리고 서비스 이용 절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당자들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B. 둘째, 학군, 카운티 산하 교육청 및 특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SELPA)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 504 조, 미국 장애인법(ADA) 그리고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자들에 관한 각주의 법률에 의거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권리에 관한 선의의 의견들을 학부모들에게 피력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제 56046 조에 의거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직원 또는 계약직 종사자의 소견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 56046 조에 위배되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캘리포니아주 규정¹⁵ 제 5 권에 명시된 통합 고소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s)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해당 고발건을 조사하여 직접 중재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DRC)의 *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특수 교육의 권리와 책임) 설명서(발행번호: 5046.01) 제 6 장을 참조(그 내용은 웹사이트 www.disabilityrightsca.org 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거나 전화 (800) 776-574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 조사지 작성\]](#)

법률 상담은 800-776-5746 으로 전화하거나 [상담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재정 지원자들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를 방문하십시오.

¹⁵ 섹션 56046 은 운영 위원회가 채택한 고충 처리 절차 또는 전체적으로 합의된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개인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요 문서로 돌아가기”